

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 
**심사보고서**

의안 번호	700
----------	-----

2023년 5월 2일  
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3. 29. 박철성 의원(강동길 의원 등 23명 찬성)
- 나. 회부일자 : 2023. 4. 3.
- 다. 상정 일자 : 제31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
- 2023년 5월 2일 상정·의결(수정 가결)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 가. 제안이유

-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 등에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료제출 거부사유를 의원 또는 의회사무처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는 바,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총괄부서에서 거부사유를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의회로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적 충돌과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관련기관 총괄부서에서 자료 제출 거부 사유를 기재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함(안 제7조제7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, 「개인정보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병수)

###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외의 기간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 거부 사유를 관련기관 총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정리 및 제출하도록 개정하여 행정적 충돌과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제안되었음.

### 2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함(안 제2조제1항)

- 안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개정하는 것은 본 의안이 제안되었을 당시에는 안 제2조제2항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조문 형식의 통일성 측면에서 필요하였으나,
- 해당 조문은 2010년 동 조례 일부개정 당시 법제처 ‘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s://www.law.go.kr>)’ 시스템상 오류로 13년간 누락되어 최근까지 이어져 온 것이 확인되어 현재는 바로잡아진 상태이므로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할 실익이 없음.
- 다만, <표-1>과 같이 지난 2010년 이후 개정하지 못한 안 제2조제2항을 현행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7조제7항은 약칭이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

<표-1> 안 제2조제2항 복원에 따른 본 조례 개정 필요사항

현 행	개정의견	비 고
제2조(감사·조사의 범위) ② 감사와 조사를 행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	제2조(감사·조사의 범위) ② 감사와 조사를 행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43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	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 사항 반영
제7조(감사·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) ⑦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40조를 따라야 하며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.	제7조(감사·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) ⑦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영 제40조를 따라야 하며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.	안 제2조제2항 복구에 따른 약칭 중복 부분삭제

**3**      **관련기관 총괄부서에서 자료 제출 거부 사유를 기재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(안 제7조제7항)**

-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) 제48조와 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) 제4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게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. 이는 안건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집행에 불법이나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기 위한 것임.
- 「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)에 따르면,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감사·조사기간 이외에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

무처장에게 자료 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(제7조제1항),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사무처장은 ‘관련기관 총괄부서’가 수합한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하고 있음(제7조제2항).

- 이는 안전심의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도 의원이 자료의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범위는 ‘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’라고 보아 그 범위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넓은.
- 행정안전부도 폐회중 서류제출요구는 안전심의회와 직접 관련된 서류로 한정하지 않고 안전심의 준비 등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까지 포함한다고 유권해석하여 서류제출요구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음.

**<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사례(질의회신 2011. 12. 15.) >**

- 만약, 의원에게 인정한 폐회중 서류제출요구의 범위를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제출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안전심의회와 직접 관련된 서류로 한정한다면 폐회 중에는 의회가 심의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의원은 폐회중 집행기관에 어떠한 서류 제출도 요구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임.
- 따라서 폐회중 의원의 서류제출요구 범위에는 상기 개정규정의 취지상 안전발의 및 안전심의 준비 등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.

- 동 개정안은 집행기관에서 자료제출 거부시 ‘관련기관 총괄부서’가 그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, 이는 관련 부서 및 기관 등에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료제출 거부 사유를 제출하고 있는 현실에서, 행정적 충돌과 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총괄부서에서 거부 사유를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은 타당함.

- 다만,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실·국·본부 책임하에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, 개정안과 같이 총괄부서를 통한 자료요구거부사유 제출도 각 실·국·본부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개정의 실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.
-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는 개정안 취지대로 소관 부서에서 의원에게 직접 거부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기획담당관에서 총괄하여 수합·제출하게 될 경우, 요구자료 제출 지연 등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,
- 거부사유를 직접 제출하지 않게 됨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자료 제출 책임감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존중함과 동시에 소관부서의 자료제출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<표-2>와 같이 거부사유를 ‘서면’으로 제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(붙임2 참조).

<표-2>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수정 의견

현 행	개정안	수정의견
제7조(감사·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) ① ~ ⑥ (생략) ⑦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0조를 따라야 하며 거부 시에는 <u>그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</u> 한다.	제7조(감사·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0조를 따라야 하며, 거부 시에는 <u>관련기관 총괄부서가 그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</u> 한다.	제7조(감사·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) ① ~ ⑥ (개정안과 같음) ⑦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0조를 따라야 하며, 거부 시에는 <u>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</u> 한다.

- 한편,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“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”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원 서류제출 요구의 구속력을 천명하고 있음.
- 법제처도 집행기관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자료내용에 사생활 침해나 정보 주체 등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정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지방의원 서류제출 요구의 구속력을 공고히 하고 있음.

**< 법제처 유권해석(07-0376, 2007. 11. 21.) >**

- 지방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요청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므로 「정보공개법」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.

**< 행정안전부 질의회신(2012. 11. 07.) >**

-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인권이나 사생활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제출범위를 판단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.

- 이처럼 법령에서 자료제출요구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데, 안 제7조제7항의 ‘거부 시’라는 문구가 존치하게 됨에 따라 집행기관은 거부사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자료제출의무를 우회 내지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없지 않은 바,
- 안 제7조제7항의 ‘거부 시’를 ‘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’로 수정하고, 그 경우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보장하는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.**

## **6. 수정안요지**

### **가. 수정이유**

-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출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고, 일부 조항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약칭 부분을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법령체계를 확보하려는 것임.

### **나. 수정안의 주요 내용**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함(안 제2조제2항)
-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제출을 서면으로 하고, 그 밖의 일부 오류 사항 등 자구를 수정함(안 제7조제7항)

## **7. 심 사 결 과 : 수정 가결**

**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8명 전원 찬성)**

**8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음.**

**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**

#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700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5월 2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출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고, 일부 조항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면서 약칭 부분을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법령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함(안 제2조제2항)
-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제출을 서면으로 하고, 그 밖의 일부 오류 사항 등 자구를 수정함(안 제7조제7항)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

○ 기타사항 : 「수정안조문대비표」 참조.

#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.

안 제2조제2항 중 “제41조” 를 “제43조” 로 한다.

안 제7조제7항 중 “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40조를 따라야 하며, 거부 시에는 관련기관 총괄부서가 그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” 를 “영 제40조를 따라야 하며,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” 로 한다.

## 수정안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감사·조사의 범위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감사와 조사를 행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감사·조사의 범위)</p> <p>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	<p>제2조(감사·조사의 범위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 제43조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감사·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)</p> <p>①~⑥ (생략)</p> <p>⑦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0조를 따라야 하며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.</p>	<p>제7조(감사·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)</p> <p>①~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0조를 따라야 하며, 거부 시에는 <u>관련기관 총괄부서가 그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7조(감사·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)</p> <p>①~⑥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⑦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<u>영 제40조를 따라야 하며,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.</u></p>

##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제41조”를 “제43조”로 한다.

제7조제7항 중 “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0조를 따라야 하며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”를 “영 제40조를 따라야 하며,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감사·조사의 범위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감사와 조사를 행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감사·조사의 범위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제43조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감사·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)</p> <p>①~⑥ (생략)</p> <p>⑦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<u>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0조를 따라야 하며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.</u></p>	<p>제7조(감사·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)</p> <p>①~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----- ----- 영 제40조를 따라야 하며, <u>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.</u></p>